

#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강효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95
----------	-------

발의연월일 : 2018. 5. 9.

찬성자 : 강효상 · 김순례 · 민경욱  
신상진 · 조훈현 · 김기선  
김정재 · 이은권 · 김재경  
최연혜 · 윤종필 · 전희경  
김규환 · 엄용수 · 김도읍  
의원(15인)

## 제안이유

최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방송, 정보통신망에서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인 반면, 신문에서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으로 분야별로 소관 기관이 달라 종합적인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의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가짜뉴스대책위원회가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 유통방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가짜뉴스 유통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 또는 왜곡된 내용의 정보로서 언론보도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나.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다. 신문과 인터넷신문에서의 가짜뉴스와 관련된 유통 방지 대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과 정보통신망에서의 가짜뉴스와 관련된 유통 방지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함(안 제6조).
- 라. 주관기관은 분야별 가짜뉴스 유통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가짜뉴스 유통 방지 대책 기본 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위원회 및 주관기관은 가짜뉴스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위원회는 주관기관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주관기관은 이에 따라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짜뉴스의 유통을 방지하여 가짜뉴스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권리 또는 그 밖의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짜뉴스”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의 정보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2.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5.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6.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말한다.
7.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8.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가짜뉴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짜뉴스의 유통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가짜뉴스대책위원회) ① 가짜뉴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3. 다음 각 목의 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

가. 대한변호사협회

나. 한국신문협회

다. 한국기자협회

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바. 한국방송협회

사. 한국언론학회

아. 한국방송학회

자. 한국납세자연맹

차. 한국소비자연맹

카. 바른사회시민회의

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 가짜뉴스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확정·변경
2.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의 마련
3. 그 밖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위원회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가짜뉴스대책실무위원회를 둔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 가짜뉴스대책실무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가짜뉴스대책 주관기관)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의 가짜뉴스와 관련된 유통방지정책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보통신망과 방송에서의 가짜뉴스와 관련된 유통 방지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주관한다.

제7조(가짜뉴스대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제6조에 따른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3년마다 소관 분야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에 관한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짜뉴스 대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확정한다.

1.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가짜뉴스 유통 방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주관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분야별 계획,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위원회 및 주관기관은 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짜뉴스 유통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가짜뉴스 유통방지 정책에 대한 평가 등) ① 위원회는 주관기관

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정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의 구체적 내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의 대상·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